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28
----------	-------

발의연월일 : 2026. 9. 11.

발 의 자 : 강준현 · 이강일 · 박상혁
김용만 · 김남근 · 조인철
권향엽 · 김문수 · 황명선
민병덕 · 복기왕 · 이훈기
이재관 · 이수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은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별적으로 대등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공동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자 간 합의가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공동협상이 활성화되기 어려웠음.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되, 물가상승 및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제45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관련하여 신고, 분쟁조정 신청 또는 조사협조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하는 보복조치만을 금지하고 있어 그 외 다른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신고나 조사협조 등의 경우에는 보복을 당하더라도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었음.

이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를 이유로 거래중단,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현행 보복조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6 및 제80조의2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노동조합·노무제공자 등의 단체행동의 경우에도 사업자적 성격을 갖는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소속노동자, 노무제공자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소기업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거래상대방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상대방’이라 한다)와 협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참가 사업자, 상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행위에 대해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5년간 제40조제1항(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후단의 행위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일 것

2. 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가.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대한민국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지된 행
위로 인해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 이후의 공동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참가 사업자
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금지
를 명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은 접수를 취소한 날 이후의 공동
행위부터 적용한다.

1. 통지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통지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제40조의3(중소기업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특례) ① 「중소기업기본
법」에 따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거래상대방 사업자(이하 이 조
에서 ‘상대방’이라 한다)와 협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참가 사업자, 상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간 제40조제1항(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후단의 행위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 것

가.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나.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각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또는 매입액 중 상대방과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다.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각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합산액이 상대방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보다 적을 것

2. 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가.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면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

다.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대한민국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된 신고를 새로운 신고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리한 행위로 인한 소비자 이익의 침해 우려 또는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하여 교섭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 이후의 공동행위부터 적용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참가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리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은 수리를 취소한 날 이후의 공동

행위부터 적용한다.

1. 신고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신고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40조의4(임시중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사업자에 대하여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공동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할 것
2.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행위가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행위가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3. 다수의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의5(통지·신고된 공동행위 등에 대한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행위에 대하여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6(보복조치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3에 따라 공동으로 협상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행위에 참여 또는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의6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의6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제46조 또는 제47조”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를 “조치”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제외한다) 또는 제46조”로 한다.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3에 따라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2제3항, 제40조의3제5항 및 제40조의4의 “참가 사업자”는 “참가 사업자단체”로 본다.

제80조의2부터 제80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80조의3(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9조제2항 본문 중 “제48조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제40조의6, 제51조제1항제1호 또는 제80조의2”로 한다.

제13장에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2(노동조합 등의 행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의 노무제공자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의 노무제공자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
4.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명령·판정·결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의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및 소속 조합원
5.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명령·판정·결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자

제124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11호) 중 “제48조”를 “제40조의6 또는 제80조의2”로 한다.

제125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0조의2제3항 또는 제40조의3제5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0조의4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40조의2(소기업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거래상대방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상대방’이라 한다)와 협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참가 사업자, 상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행위에 대해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5년간 제40조제1항(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후단의 행위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u>1.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일 것</u> <u>2. 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u>

가.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
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
하는 회사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
(대한민국 외의 법률에 따
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
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지
된 행위로 인해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
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기
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
0조제1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
이후의 공동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참가 사
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또
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
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은 접수를 취소한 날 이후의 공동행위부터 적용한다.

1. 통지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통지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제40조의3(중소기업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거래상대방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상대방’이라 한다)와 협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참가 사업자, 상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

고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간 제40조제1항(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후단의 행위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모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나.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각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또는 매입액 중 상대방과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다.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각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합산액이 상대방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보다 적을 것

2. 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
외한다)

가.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
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
하는 회사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면서 자산총액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

다.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
(대한민국 외의 법률에 따
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
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그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

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된 신고를 새로운 신고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리한 행위로 인한 소비자 이익의 침해 우려 또는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하여 교섭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 이후의 공동행위부터 적용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참가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신 설>

따라 수리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은 수리를 취소한 날 이후의 공동행위부터 적용한다.

1. 신고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신고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40조의4(임시중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사업자에 대하여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공동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으

<신 설>

로 정하는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할 것

2.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행위
가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또는 제40조의3제1항
에 따른 행위가 같은 조 제4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3. 다수의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
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제40조의5(통지·신고된 공동행
위 등에 대한 조사 등) ① 공정
거래위원회는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40조의
3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
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 설>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행위에 대하여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6(보복조치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3에 따라 공동으로 협상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행위에 참여 또는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

제42조(시정조치)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제43조(과징금) (생략)

<신설>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제45조제1항의 불공정거래

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시정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의 6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3조(과징금) ① (현행 제6조의 부분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의 6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삭제>

행위 및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4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45조제2항 및 제47조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에게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

제49조(시정조치) ① -----
 ----- 제46조 또는 제47조-----

 ----- 조치-----

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
①·② (생략)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과징금) ① -----
----- 제외
한다) 또는 제46조-----

-----.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3에 따라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2제3항, 제40조의3제5항 및 제40조의4의 “참

③ · ④ (생략)

<신설>

<신설>

가 사업자”는 “참가 사업자단체”로 본다.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80조의2(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80조의3(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④ (생략)

<신설>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2(노동조합 등의 행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행
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

1조의15 제1호의 노무제공자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1항의 노무제공자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

4.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노동

위원회의 명령·판정·결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제2조제4호의 노

동조합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

는 그 연합단체 및 소속 조합

원

5.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노동

위원회의 명령·판정·결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

	<u>계조정법」 제2조제1호의 근 로자로 인정되는 자</u>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벌칙) ① -----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10.</u> (생 략)	<u>11.</u> (현행 제10호와 같음)
<u>11.</u> <u>제48조</u> 를 위반한 자	<u>10.</u> <u>제40조의6 또는 제80조의2-</u> --
12. · 13. (생 략)	12.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25조(벌칙)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 제40조의2제3항 또는 제40조 의3제5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 지 아니한 자</u>
<u>4.</u> ~ <u>7.</u> (생 략)	<u>5.</u> ~ <u>8.</u> (현행 제4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
제130조(과태료) ① 사업자, 사업 자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 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제130조(과태료) ① ----- ----- ----- -----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사업자단체·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u><신설></u> <u>6.·7.</u> (생략) ② ~ ④ (생략)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u>6. 제40조의4에 따른 임시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u> <u>7.·8.</u>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